

제324회 시의회 정례회

환경수자원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박성연 의원)

2024. 6.

푸른도시여가국

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1826호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
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
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맹견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반려견으로
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 및
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사항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
예방 및 완화를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
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코자 한 내용으로 우리국
검토의견은 ‘원안동의’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